

보도시점 : 2026. 8.4.(화) 국무회의 종료 시 별도공지 / 배포 : 2026. 8. 4.(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 교통사고 나이통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통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9~'24년 경상환자 수) 155.4 → 146.0 → 141.6 → 145.0 → 145.8 → 148.8만명(연평균 -0.9%)
('19~'24년 경상환자 치료비) 1.00 → 1.09 → 1.15 → 1.30 → 1.31 → 1.41조원(연평균 7.0%)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시행일(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구분(1~14급) 중 12~14급에 해당, 주로 염좌·타박

○ (검토 절차)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 (이의제기 절차)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손배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환자가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참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

□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❶국민 부담 완화, ❷치료권 보장, ❸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❶ (국민 부담 완화)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또한,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9월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❷ (치료권 보장)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제외)

❸ (신속·공정 검토 체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학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되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

○ 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하여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퉁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담당자	팀 장	백선영 (044-201-4760)
			사무관	김준식 (044-201-4761)
			주무관	박형빈 (044-201-4870)
			전문위원	전용환 (044-201-4763)

2026 한눈에 보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필요한 치료는 더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더 가볍게!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면, 가입자의 부담도 증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지급을 줄여
자동차보험을 실제 치료 중심으로 바꿉니다.



장기치료 필요성을 전문가가 검토합니다.

경상환자의 적정 치료 보장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전원원이 위촉한
전문가가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검토 대상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뺨, 턱박 환자를 대상으로 함

제출서류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영상CD 등
(서류 발급비용은
보험회사들이 부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 의료인이 8주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추가 치료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1차



자배원 내 전문의 검토

- 1 검토서류 제출 요청(보험사→환자)
- 2 서류 제출(환자→보험사, ~7주차)
- 3 검토 요청(보험사→자배원, 즉시)
- 4 결과 통보(자배원→보험사·환자, 8주차)

2차



이의제기 시 전문의 검토 결과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 1 이의제기(환자→위원회, ~9주차)
- 2 결과 통보(위원회→보험사·환자, 11주차)

충분한 실제 치료를 보장하여, 환자의 치료권을 보호합니다.

개선 전	개선 후
기준 없는 향후치료비	실제 치료를 보장
과도한 합의금을 유발하는 나이록 환자	불필요한 진료 억제
향후치료비 수령 후 미치료 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환자의 상태에 따라 8주 이내 치료와 검토 결과 인정받은 치료를 보험회사가 부담
합의 후 추가 치료비 발생 시 환자 부담 가중	
합의 중심	치료 중심

※ 8주는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니라 “필요성 확인 시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줄입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



- ✓ 실제 치료 보장
- ✓ 불필요한 진료 억제

치료권 보호



- ✓ 확인되지 않았던 상병 발견
- ✓ 상해 등급에 따른 적정 치료 보장

조기합의 관행 개선



- ✓ 치료 경과에 따른 충분한 치료
- ✓ 보험회사등의 반복적인 합의 중용 감소

공정한 자동차보험



- ✓ 자동차보험 신뢰도 제고
- ✓ 올바른 배상문화 정착

사실은 이렇습니다.

Q1. 보험회사만 이익을 보는 제도가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효과가 실제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수입 지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금 인하분은 차년도 보험료 인하로 반영됨

Q2. 건강보험으로 치료비가 전가되지 않나요?

A2. 치료종단 후 건강보험 수급 시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인과관계 확인 후 공단 부담금을 보험사에 구상합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보험사 정보 공유 전산시스템 연계가 추진**됩니다.

Q3.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나요?

A3. 아닙니다. **8주는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전문의 검토에 따라 필요한 치료는 보장됩니다.

Q4. 모든 자동차사고 환자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나요?

A4. 아닙니다. 모든 환자가 아닌, **단순 뺑, 타박 환자 중에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에 한합니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임신부는 검토 대상에서 추가 제외)

국내 외 유사사례

캐나다	4, 8, 12주에 치료종결 여부 결정
호주	7일, 3주, 6주, 12주에 치료종결 여부 결정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시 진료계획서 심사

자동차보험이 치료중심으로 변화합니다!

✓ 전문의학회 추천 심사위원의 공정한 검토!

✓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 이의제기로 권리는 확실하!

✓ 자동차보험료 부담은 더 가볍게!

✓ 국민이 신뢰하는 자동차보험 문화 정착!

